

보도 일시	2022. 9.26.(월) 조간 2022. 9.25.(일) 11:00	배포 일시	2022.9.23.(금) 오후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진희 (044-200-5610)
		담당자	사무관 김지환 (044-200-5623)

스티로폼 부표를 퇴출하기 위해 함께 뭉친다!

- 어업인, 환경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열린소통포럼 개최(9.26.)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9월 26일(월) 정부세종청사 대강당(6동)에서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주제로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스티로폼 부표를 단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난해 11월에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도 개정했다. 또한, 어업인과 환경단체, 각 분야의 전문가와 소통하는 ‘열린소통포럼’을 총 5차례 개최**하고, 포럼에서 제기된 의견을 스티로폼 부표 퇴출 정책에 반영해왔다.

*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거나 스티로폼 알갱이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환경유해성, 내충격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부표

** (1차)‘19.11.26, 세종, (2차)‘20.2.6, 통영, (3차)‘20.2.11, 진도, (4차)‘21.12.6, 통영, (5차)‘21.12.7, 여수

이번 열린소통포럼에서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2년 11월 13일(일)부터 김·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를 새로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안내하고,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위한 정책 추진현황과 지원 방향을 공유한다. 또한,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는 인증부표를 사용하는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열린소통포럼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인증부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를 위한 예산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는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어업인과 각계 전문가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해양수산부, 지자체, 어업인, 시민단체가 함께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1

열린소통포럼 개요

□ 행사 개요

- (목적) 양식장 내 스티로폼 부표 사용 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 소통의 장을 마련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1.11)으로 스티로폼부표 신규 설치 금지('22.11. 시행)

- (일시/장소) '22. 9. 26.(월) 14:00 ~ 16:00 / 정부세종청사 대강당(6동)
- (참석자) 해양수산부, 어업인, 지자체, 환경단체, 부표 인증기관 등 40여명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2'	인사 및 행사 안내 등	사회	
14:02	3'	포럼 개회사	어촌양식정책관	
14:05	20'	주제1. 스티로폼부표 제로화 정책 추진 및 지원 방향	해양수산부 김지환 사무관	좌장: 김대영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20'	주제2. 인증부표 인증기준 개선 및 사후관리 방안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장필성 책임연구원	
	20'	주제3. '24년 스티로폼 부표 사용 규제 후 문제점과 해소방안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지욱철 이사장	
	20'	주제4.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재정정보원	
15:25	30'	현장 참여자 질의 및 응답		
15:55	5'	마무리		

참고 2

열린소통포럼 사진



참고 3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1.11.) 주요 내용

□ 개정 목적

- 양식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 중에 쉽게 파손되어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함에 따라, 어장환경 훼손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
-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요 내용

- 어장 내 발포폴리스티렌(EPS) 부표 사용 금지('21.11.12. 개정)
 - 어장에 설치하는 발포 부표의 경우 발포폴리스티렌(EPS)이 포함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어장부표 규격 개정
 - * (기준) 발포 부표(EPS)의 경우 파손을 줄일 수 있는 고밀도($0.020\text{g}/\text{cm}^3$ 이상) 제품
 - (개정) 발포 부표의 경우 발포폴리스티렌(EPS)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김, 굴 등 수하식 양식업 '22.11. 시행, 기타 양식장 등 '23.11. 시행)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어장부표의 규격)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어구 등을 어장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부표 (이하 "어장부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1. 발포 부표의 경우 발포폴리스티렌(EPS)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
2. 비발포 부표의 경우 경제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합성수지를 재료로 성형(成形)하거나 피복(被服)된 제품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을 통하여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에게 보급되는 친환경 개량 부표

[시행일]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양식업
가. 수하식양식업에 해당하는 양식업: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나. 가목을 제외한 종류에 해당하는 양식업: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2.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어업: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부칙] 제2조(어장부표의 규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신규로 설치하는 어장부표부터 적용한다.